

의안번호	제 722 호
의결연월일	2025. 12. 2.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5. 11. 14.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22 호
----------	---------

제출연월일 : 2025. 11.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정이유

- 관련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의, 명칭, 사업(안 제2조, 제3조)
- 출자방법 및 비율(안 제4조)
- 사업자금의 차입(안 제5조)
- 주주권의 행사 및 이사 지명(안 제6조, 제7조)
- 정기보고 (안 제8조)
- 정관, 설립등기(안 제9조,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겸임(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서식)

3. 단계별 추진사항

- 입법계획 수립 : 2025. 9. 11. (농업정책과-26139)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5. 9. 19. (가족지원과-30931)
- 입법예고
 - 2025. 9. 12. ~ 10. 2.(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5-2307호
 - 결 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 2025. 10. 10.(기획예산담당관-15604)
- 조례·규칙심의회 : 2025. 10. 22.(기획예산담당관-16315)
- 시의회 의결 : 2025. 12월 중
- 공포·시행 : 2025. 12월 중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 라. 법제심사 결과
- 마. 기타 참고할 내용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시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 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과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⑤ 시는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산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이사 지명권) 시장은 법인 이사회에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시장은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관)

-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SPC 출자금
- 관련조문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 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과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SPC(나인팜) 자기자본(128.5억원)의 4%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514,000	514,000	-	-	-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SPC 출자금(SPC자본금의 4%)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	-	-	-	-
배당금		-	-	-	-	-	-
세 출		514,000	-	-	-	-	514,000
출자금		514,000	-	-	-	-	514,000
재원 조달		514,000	-	-	-	-	514,000
자체 수입	소 계	514,000	-	-	-	-	514,000
	일반회계	514,000	-	-	-	-	514,000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통보

1. 농업정책과-26301(2025. 9. 1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족지원과장 

주무관	조영미	여성정책팀장	출장	가족지원과장	2025. 9. 19.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30931	(2025. 9. 19.)		접수	농업정책과-26954	(2025. 9. 19.)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popoya97@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서산046		
정책명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정인교	전화번호 041-660-23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관련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영미/041-660-3021)			
농업정책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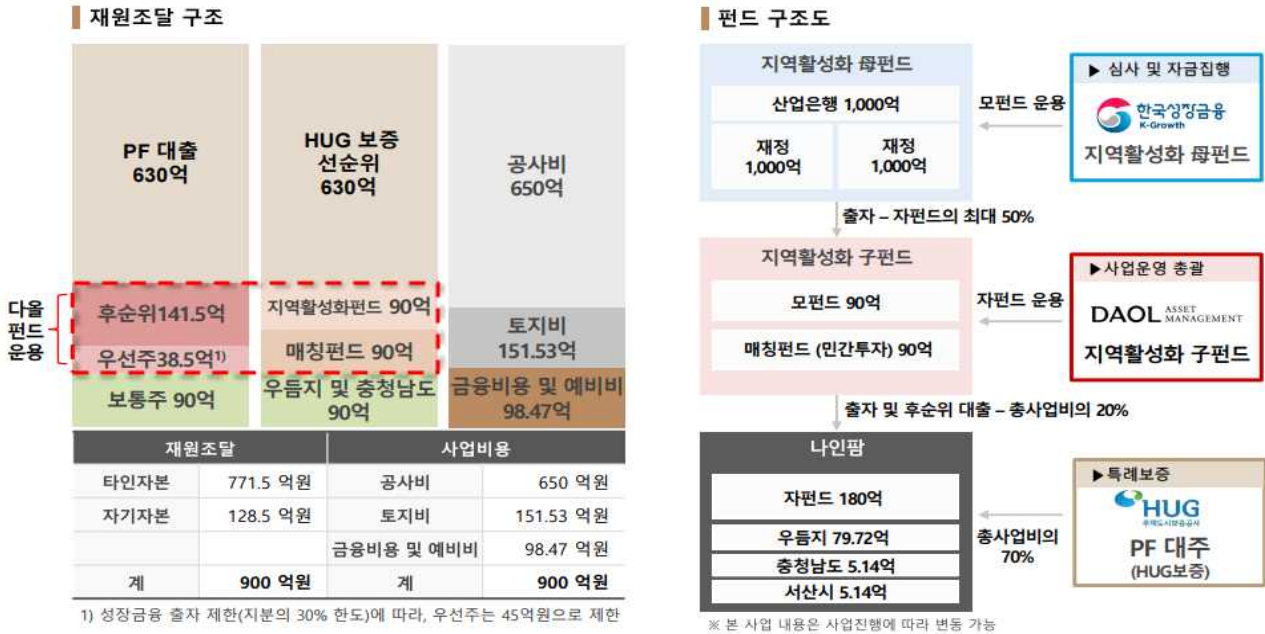
□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사결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정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 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 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5. 10. 10.(제1284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 기타 참고할 내용 첨부

□ 지역활성화 펀드 재원조달 구조 및 펀드 구조도



□ 출자근거(지역활성화 펀드 통합안내서)

- (지자체 출자)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가 SPC 자본금의 최소 8% 이상 출자 (보통주)하며, 광역지자체*의 출자는 필수입니다

* 광역 지자체(지분을 보유한 산하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등 포함)는 보통주 출자를 필수로 하되, 8% 이상 조건은 기초 지자체(지분을 보유한 산하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등 포함)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지자체에서 보유한 토지 및 건물로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 단, 지자체의 자펀드 출자는 선택 사항입니다